

#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

제정 2021. 03. 17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제3조에 따른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와 관하여는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고,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임명은 관련 업무와 산업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선임할 수 있으며,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정한다.

③ 진흥원의 경영지원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호선하여 정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.

**제4조(위원의 제척·회피·해촉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인인 경우

2.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기타사유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제2항의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수행서약 위반·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전문가 Pool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전문가 분류기준의 제정, 개폐에 관한 사항
3. 전문가 검증 및 승인에 관한 사항
4. 불성실 심사평가위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
5. 위원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6. 기타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관장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내용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7조(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- ⑤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전문가를 통해 그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- ⑧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의 권리를 제한시킬 수 있다. 단, 위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**제8조(회의록)**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1. 회의 일시 및 장소
2. 참석자
3. 회의사항 및 회의결과
4.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된 사항이나, 개인 및 단체 등의 명예훼손,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9조(서면결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, 대리참석을 금지한다. 단,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의 서면결의 서식에 의하여 서면회의를 통지하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한다.

**제10조(수당지급 등)**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업무상 출장, 사전 검토 등 진흥원 업무에 따른 비용발생시 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 (비밀 유지)**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및 의결사항 중 비밀 또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부 칙(제정 2021.3.17.)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